

2015년도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 공고

중소기업의 각종 애로를 전화(☎1357), 방문(지방중소기업청), 인터넷(www.1357.go.kr)을 연계하여 상담에서 현장해결까지 전문가가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『2015년도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19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.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, 법률, 노무, 회계, 기술, 특허 등의 기업 경영 애로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(☎1357), 방문(지방중기청), 기업마당(www.1357.go.kr) 등을 통해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

2. 지원규모 : 전문가 상담(무료), 현장클리닉(13억원)

3. 지원내용

- (상담)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 애로를 무료 종합상담

<비즈니스지원단이란>

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치된 변호사, 관세사, 변리사, 회계사, 경영·기술지도사 등의 전문가

- (현장클리닉)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(3일)에 애로 해결

- 지원분야 : 창업·벤처, 법무·규제 등 10개 분야(아래 참조)

분야	현장클리닉 세부 내용
창업/벤처	창업절차, 사업계획, 공장설립, 사업타당성 검토, 벤처 등록 등
법무/규제	법률자문, 상사분쟁, 인수합병, 국제분쟁, 회생·퇴출, 신용회복 등
금융/환위험관리	정책자금 안내, 환위험 관리, 자금 관리,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
인사/노무	인사관리, 조직개발, 목표관리, 연봉제, 직무분석 등
세무/회계	재무분석, 세무/회계관리, 세법 검토, 조세법령 검토, 회계감사 자문 등
경영전략	경영전략 수립, 환경경영 등
기술/특허	기술동향, 지식재산권 관리, 해외출원, 기술보호, R&D역량강화 등
정보화/융합기술	정보화전략 자문, 정보화기반 구축, 정보화교육, 정보화 융합기술 등
생산관리	작업개선, 품질개선, 원가관리, 공정개선 등
마케팅/수출입	마케팅전략, 시장조사, 수출입정보, 수출입관련정보, 관세법, FTA 활용 등

* 현장클리닉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후 지원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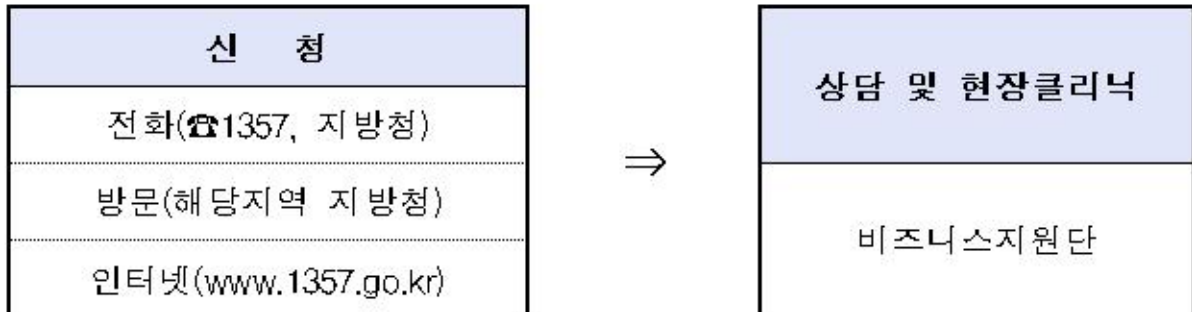
4. 지원대상

- (상담)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
- (현장클리닉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

신청대상 업종 (표준산업분류번호)	신청대상 제외
① 제조업(10~33), 광업(05~08), 운수업(49~52)	·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(33402中) ·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(33409中) ·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(52914) · 주차장 운영업(52915)
②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37~39)	-
③ 도매 및 소매업(45~46)	· 주류, 담배 중개업(46102中), 귀금속 중개업(46109) · 주류, 담배 도매업(46331, 3) ·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(46463) · 귀금속 도매업(46492)
④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58~63)	·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中)
⑤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	·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 ·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 · 비금융지주회사(7152),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서비스업(7153) · 수의업(731)
⑥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(74~75)	· 경비, 경호 및 탐정업(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0) 제외) ·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 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 제외)

* 상기 ① ~ ⑥ 이외의 모든 업종(예, 건설업, 금융 및 보험업 등)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
5. 지원절차



* 현장클리닉은 상담 비즈니스지원단의 추천에 의해 지원

6. 지원조건

- 기업당 3일, 105만원 (정부지원금 70%, 기업부담금 30%)

*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(연말 세금 환급 가능)

7. 신청기간

- 공고일 ~ 12월(토,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상담)

* 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

8. 신청방법

- 방 문 :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(9.신청접수의 주소 참조)
- 전 화 : 국번없이 ☎1357(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) 또는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(9.신청접수의 전화번호 참조)
- 인터넷 : 기업마당(www.1357.go.kr) > 비즈니스지원단 메뉴

* 법무분야는 법무부의 9988법률지원단(02-3418-9988)으로 신청해도 됨

9. 신청접수 : 11개 지방청 및 4개 사무소(센터) 비즈니스지원단

기관명	전화	주소
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2110-6351~3	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1동106호
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	051-831-1357	부산광역시 감서구 녹산산단 335로 8
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	052-283-0340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270~2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	062-360-9137~9	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합연구센터	064-723-2101~3	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-21
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805~7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	031-820-9001	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
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48~50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81~3	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	041-564-3862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
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25~6	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06~8	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36~8	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46~7	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10. 문의처

- 11개 지방청 및 4개 사무소(센터) 비즈니스지원단
-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(042-481-4592)
- (사)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(02-6205-8122)